

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5일	
신고인	업종	등록번호		제 호	
	상호(명칭)				
	대표자	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	
	영업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			
변경사항	변경 구분				
	변경 연월일				
	변경 후				
	변경 전				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상호(명칭)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.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,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.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수첩,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국가기술자격증 나.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.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	1. 상호(명칭),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: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,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: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합니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